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한도액안 국회 의결 절차 신설〉

■ 최형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497호)

2025. 2.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형두 · 김상욱 · 강대식 · 정동만 · 조인철 · 윤한홍
김소희 · 서천호 · 강승규 · 이종욱 · 김종양 · 허성무
김미애 · 이양수 · 서일준 · 윤영석 · 신성범 · 최보운
김예지 · 유상범 · 조정훈 · 주호영 · 김상훈 · 서범수
조은희 · 김태호 · 박정하의원(27인)

2. 제 안 일 : 2024. 11. 12.

3. 회 부 일 : 2024. 11. 13.

※ 의안번호 : 549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는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제출된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4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2제1항¹⁾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한도액안을 심의·확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①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u>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한다.</u>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① ----- ----- ----- -----한도액안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한도액안-----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²⁾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의 총한도액등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함. 이에 맞추어 「국회법」 제84조의4는 임대형

-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2(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하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및 심의·확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이는 임대형 민자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정부의 재정부담을 발생시키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의 사전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임.³⁾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2024. 1. 23.)⁴⁾으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역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회법」에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회부 및 확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전액 국고로 추진되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임대형의 경우 정부가 임대료 지급을 통해 투자금을 분할 상환하여 중장기 재정소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임대형 민자사업과 그 실질이 유사함. 이를 고려하면, 국회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한도액안을 심의·확정하도록 한 개정안은 법률 간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함.

3)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425.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2(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하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 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사업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예비한도액 금액, 총한도액등 국회 제출 및 총한도액 변경에 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2항·제3항 및 제7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개념 및 유형 》

◇ (개념) 전액 국비 및 **용역구축(SI)** 방식으로 추진되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민간의 투자를 통한 수익을 적극 허용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소프트웨어사업

◇ (유형) 임대형(개발형), 수익형(개발형), 구매형의 **3가지 사업 유형으로 구분**

		추진방식	수익구조(투자금 회수)
개발형	임대형	민간이 투자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발주기관이 임대료(투자금 분할 상환) 지급
	수익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용자(국민)가 지급
구매형		이미 개발된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 ※ 디지털서비스계약제도 포함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급

[(임대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구조]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활성화에 힘을 더하다.”, 2022. 11. 17.

다만, 「국회법」상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관한 규정이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⁵⁾을 함께 정비하는 등 일부 체계·자구 보완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015

5)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 제59조, 제59조의2, 제84조의4제2항, 제85조의3제1항